

# - 2025년 2월 졸업대상자 -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결격사유 조회 안내

2025년 2월 졸업대상자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안내해드리오니, 아래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향후 교원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## 1. 2025년 2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접수

구분	내용	비고	
대상	① 졸업예정자: 2025년 2월 학위 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② 졸업자: 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자 * <b>무시험검정원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졸업사정과 함께 확정하여 교원자격증 발급(대상자 모두 해당)</b>	* 무시험검정원서 제출대상인지 <b>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</b>	
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	<b>2025.01.03.(금) ~ 01.17.(금)</b>	* 미신청시 사정대상 제외 및 교원자격증 미발급	
신청 방법	<b>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</b>		
	포털 (통합정보 시스템)	① 포털(통합정보시스템)/학사행정/교직/무시험검정관리 - 무시험검정신청 > [신청] * 신청 후 「 <b>무시험검정원서출력</b> 」으로 신청사항 확인	* 신청: 포털(통합정보시스템)  *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<b>기본증명서</b> 제출
제출 서류	서류종류	① <b>마약류 중독여부 증빙 제출</b> *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기간 중 제출	* 사범대학에서 일괄조회
	유효기간	* 교사자격취득 <b>신청일 기준 1년 이내</b> 에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 * 포털(통합정보시스템)에 무시험검정 신청 전 마약류 중독 여부 검진·서류발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	
	제출방법	* <b>원본제출</b> * 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* 주소: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, 미추홀타워 별관 A동 315호 [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교학실]	* 방문: 신청기간 중 평일 09:00~17:00 (12:00~13:00중식) * 문의: 032-835-8652~4
교원자격증 발급	* 졸업 요건 충족자로 「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」 제출자에 한하여 교원자격검정령의 기준 충족여부 심의 후 적격자 <b>2025.02.21.자 교원자격증 발급</b> *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결과, 교원자격 취득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		

## 2.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

### □ 대상 및 관련 근거

구분	내용	
대상	2021.06.23.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	
관련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 및 「유아교육법」 22조의2</li> </ul>	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</li> <li>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/ul> </li> <li>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li> </ol> </li> </ul>	

### □ 조회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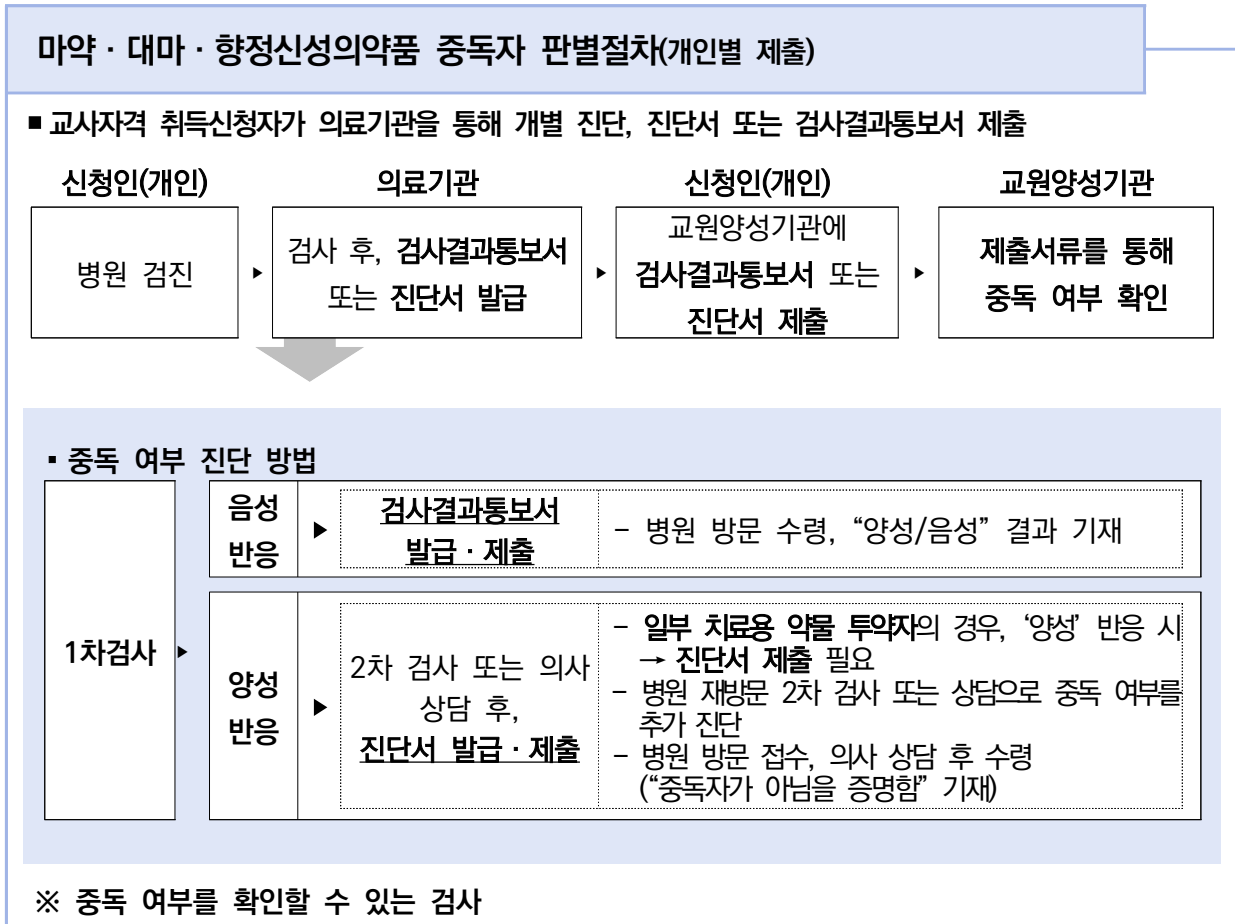
- (성범죄경력)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**성범죄 경력 일괄조회**
  - 신청자: 포털(통합정보시스템)에서 무시험검정 신청 시 「성범죄경력」 및 「행정정보 공동이용」 동의
  - 사범대학: [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] 활용하여 일괄조회
- 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) 개인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<붙임1,2 양식 참고>

### 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제출 서류 및 검진안내

- (제출서류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**진단서** 또는 **검사결과통보서**
  - ※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1차 검사 '양성'반응이 가능하므로,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'의사의 진단서'를 제출
  - ※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'마약류 중독자가 아님'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 가능

- 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**1년 이내에**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  - (검진기관)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,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예약 필요)
- 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
## 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절차



## 3. 문의

□ 결격사유 등 교원자격취득 사항 관련: 032-835-8652~4

□ 검진 예약·서류 발급 관련: 각 의료기관

※ 서류발급 비용, 검진절차, 소요기간 등은 각 의료기관 별로 상이하므로, 방문하시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건강 진단서

원부대조필 인

병록번호 \_\_\_\_\_  
 연번 \_\_\_\_\_  
 주민등록번호 \_\_\_\_\_ - \_\_\_\_\_

성명		성별		생년월일		연령	
주소				전화			
병명							
소견	<p>위 사람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</p> <p>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</p>						
비고							
용도	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			진단일			
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	<input type="checkbox"/> TBPE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시약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				

발행일 : \_\_\_\_\_  
 의료기관 : \_\_\_\_\_  
 주소 및 명칭 : \_\_\_\_\_  
 전화 및 FAX : \_\_\_\_\_  
 면허번호 : 제 \_\_\_\_\_ 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사성명 \_\_\_\_\_ (인)

※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

붙임2

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[예시]

접수번호

--

##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

구분	시험시행기관	접수번호	성명
검사시행			(한글)
주민번호			
주소		전화번호	집)
			휴대폰)

### 검사내역

검사내역			
TBPE검사		기준범위	
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2024년 00월 00일

담당의사: (인)

의사소견	
종합판정	
판정보류 소견	
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24년 00월 00일 검사 기관 (인)	
사용제한	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용도 외 專用(전용)금지

※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(전국 '건강관리협회-메디체크'에서 발급 가능)

※ 상기 통보서는 예시로,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